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 위임범위의 일탈, 미 규정사항 등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안 제8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사유 조항 신설(안 제11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대상”을 “지정·변경·취소대상”으로 변경

라.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조항 삭제(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한다.

제11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를 “지정·변경·취소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정·변경대상”을 “지정·변경·취소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u>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③ -----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u>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u>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u>지정하거나 변경</u>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 4. (생략)	제11조(<u>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u>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지정·변경·취소하고자</u> ----- ----- -----. ③ ----- ----- <u>지정·변경·취소</u> -----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 4. (생략)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
-----지정·변경·취소 ---

---.

1. 지정·변경·취소대상 ----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
지 않는 경우

2. 구미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
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소관 실 · 과		과학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김 우 춘
	담 당	유 경 숙
	담 당 자	손 수 연 (480-6183)